#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

: 고용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장애유형,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 결혼생활만족도, 일상생활 차별경험

# 1. 서론

결혼이란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함께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성적·심리적·경제적 결합을 하는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가족의 주요기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 자녀의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 유지 기능 등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Anderson and Sabatelli, 2003), 이는 어디까지나 부부의 결혼생활만족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질적이 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족에게 기대되는 원천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부부 개인이 결혼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하느냐는 부부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관계에 있는 다른 가족원의 행복과 안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망감이나 좌절을 안겨주기도 한다(Karney and Bradbury, 1995). 비장애인도 결혼으로 인해 새롭게 전개되는 부부관계. 가정 역할 분담,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소득 및 경제생활 유지 등에 전에 없던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지하게 되 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로 인한 핸디캡만으로도 결혼생활 유지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상생활 전면에서 차별을 받는 정도 가 심각하다.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인식은 점점 높아지고는 있으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남아있는 듯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2001, 11,25) 장애인차별금 지법 시행 전(2008, 4.11)까지의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653건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은 총 6.540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이는 그동안 수면아래 가려져왔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 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된 차별, 시각・ 청각장애인의 경우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된 차별. 뇌병변장애인 및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대출 거부와 놀이시설 및 식당 등 특정시설의 이용 거절과 관련된 차별, 정신장애인은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의 차별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1)의 연구에서도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경험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Beckles(2004)도 장애인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소외와 고립, 그리고 열악한 삶의 질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하였다. 김민윤(2012)은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은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만이 아닌 사회참여 통로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욕구충족 제한과 생활에서의 만족도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물론 직업생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이에 부가되는 차별적 경험이 결혼생활만족도를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이 된 인간은 결혼을 당연하게 받이들이고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며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정은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재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제도라 할 수 있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주제는 그동안 한국사회 가족연구 분야에서 일찍이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다뤄져 왔으나(조혜선, 2003), 유독 장애인에 있어서는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결혼을 사회적 제도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박명숙, 2013).

그러나 최근 들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집중조명 되면서 장 애인의 생활실태 차원의 연구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성원으 로 살아가게 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삶의 만족이 중요하고, 이들에게 편견과 차별로 인해 소외되고 고 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다(고민석·김동주, 2014: 김광자, 2011: 김범규·남용현, 2014: 김종일, 2013; 박현숙·양희택, 2013; 박현숙 외, 2013; 백은령·노승현, 2010: 백은령·노승현, 2012; 손진영·김형모, 2014; 염동문·이상대, 2014; 이중섭, 2009; 한애경·윤 혜미, 2012). 그러나 장애인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 결혼으로 인한 생활만족 즉. 장애인에게 있어 결혼 생활이 갖는 의미와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실정이다(권영 은, 2005; 김혜경, 2005; 문승연, 2002; 박명숙, 2013; 양정빈·김소진, 2011; 오혜경, 2011; 임수민, 2011; 조혜현.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라는 장애인의 장애관련 요소가 결혼한 장애인의 결혼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차별경험이 매 개가 되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결혼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부부 개인 의 주관적인 감정 또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Hawkins et. al., 1977; Karney and Bradbury, 1995; 권 정혜, 채규만, 1999; 정혜선, 2005; 이정숙, 2009). 결혼생활 만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결혼행복 (marital happiness), 결혼의 질(maritalquality), 결혼 적응(maritaladjustment), 결혼 성공 (maritalsuccession). 결혼 안정성(maritalstability) 등 여러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먼저. 유옥(2010)은 결혼생활 만족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만족이란 한 개인 이 느끼는 충족의 정도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하였고. 성계화(2012)도 결혼생활만족도는 객관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체적으로 결혼의 행복, 성공. 적응도 등으로 표현된다고 하 였다. Rice(1990)는 결혼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욕구가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충족되어지는 감정의 정도라고 하였고, 김득성(1994)은 결혼생활만족도를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의 총 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Hawkins(1968)는 결혼생활 만족을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 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감정 또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정숙 (2009)은 결혼생활만족도를 만족 대 불만족으로 양립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즐거움 대 즐겁지 않

음, 행복 대 불행, 충족 대 불만과 같은 감정을 매우 만족에서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결혼만족의 개념은 결혼생활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한편 또 하나의 정의는 결혼생활 만족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결혼에 대해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실제로 그 사람이 결혼을 통해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정도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즉, Rollins와 Feldman(1970)은 결혼생활 만족을 결혼생활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경험하는 감정이나 태도로 정의하였고, 김명자(1985)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기대와 실제와의 차이에 대해 개인적 관점에 따른 주관적 만족의 일종으로,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느냐가 결혼생활 만족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즉, 결혼생활 만족은 결혼에 대해 개인이 가졌던 기대와 현재 상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결정되며, 순수한 인지적 평가라기보다 그 과정 속에 경험이 수반되는 감정 또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결혼생활 만족의 개념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 하기란 어렵지만, 후자에 비해 전자의 결혼생활 만족 개념은 기대와 보상 사이의 일치에 따른 감정 이외의 더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주관적 경험 반응으로 이해하게 하여 보다 포괄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부부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목표와 기대치와의 일치뿐 아니라 결혼을 유지하면서 느끼게 되는 생활경험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 감정 또는 태도로 보고자 한다.

## 2)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결혼생활만족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와 같은 장애관련 특성은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이 실시한 장애인들의 결혼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응답 장애인의 83.9%가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이러한 만족의 정도는 장애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간장애·안면장애(100.0%), 신장장애(94.0%), 호흡기장애(93.1%) 등의 순으로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변용찬 외(2009)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중증(1~2급)의 경우 '매우 만족' 26.5%, '약간 만족' 32.7%, '약간 불만족' 8.3%, '매우 불만족' 5.0%로 나타난 반면, 경증(3~6급)의 경우 '매우 만족' 28.9%, '약간 만족' 36.5%, '약간 불만족' 4.9%, '매우 불만족' 2.8%로 나타났다. 즉, 경증에 비해 중증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장애정도에 따라 결혼생활만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의 결혼만족도 관련 인과관계 연구에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주요변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김혜경(2005)도 그동안 이루어진 장애인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들이 장애정도 등 장애특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뇌성마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연구한 권영은(2005)의 연구는

뇌성마비라는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결혼생활의 만족이 높아 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해 연구한 오혜경(2011)과 김혜경 (2005)의 연구에서는 1~6등급으로 나눈 장애등급에 따라 결혼생활만족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러한 차이가 결혼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기 도 하여. 장애의 등급을 많은 급간으로 세분하지 말고 재분류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반면, 결혼생활만족도와 유사하게 백은령 · 노승현(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정도가 장 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는 어느 정도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 (2)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에 관한 장애인 혹은 비장애 대상의 많은 연구에서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유의 성을 입증하고 있다.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이정은(1999)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여성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결혼만족도에 있어. 직업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홍숙선(2001)의 연구에서도 월수입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증명하였다.

김효신(1999)은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를 연구하면서 자아존중감, 성만족도, 경제적 수 입 순서로 높은 영향력을 있음을 증명하여 경제적 수입의 정도가 결혼만족도의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 였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만족도를 연구한 문승연(2002)도 경제적 안정이 가장 높은 영 향을 미치고 있고, 이어서 자녀출산. 사회적 안정. 성관계 만족 순으로 영향력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 였다.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1989)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의사소통과 성만족, 경제생활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오혜경(2011)은 여성과 남성 장애인의 결혼만족도 영향 요인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가구소득을 높임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계가 있 음을 증명하고 있다.

결혼만족도의 상반개념으로 결혼만족도를 해석할 수 있는 결혼불안정성 관련 연구에서 현은민 (2007)은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입증하였고, 조성희 (1999) 역시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결 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적대 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지지적 행동은 감소하여 결국 부부관계는 갈등적이 되기 쉽다(Conger et al., 1990; Vinokur et al., 1996)는 이론을 증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결혼만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원이론 입장에서 입증한 조혜선(2003)은 개인 이 가족에게 어떠한 자원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 고, 이를 토대로 부부 개인의 결혼만족도가 결정된다고 설명하면서. 물질적 기반에 해당하는 경제적 자원이 개인별 차이를 형성하는 핵심 자원이론 요소로서 자원에 따른 권력의 차등은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부관계에서도 희생보다는 혜택을 누림으로써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

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 (3) 차별경험과 결혼생활만족도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가족 내에서의 차별과 폭행을 비롯, 성희롱, 성추행, 학교입학 및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험가입 및 운전면허 취득, 정보통신이용, 지역사회생활 유지 등 생활 전면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결혼한 여성지체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양정빈·김소진(2011)도 여성지체장애인에게 '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돼'라고 하는 차별이 모든 생활에 전제되는 차별경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오혜경(2006)도 여성장애인의 차별 관련 연구에서 여성이 장애로 인해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항상 또는 가끔 느낀다는 경우가 35.3%로 차별에 대한 인지정도가 비교적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결혼생활은 물론 직장생활 및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차별경험은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백은령·노승현, 2010: 박준성 외, 2011: 박현숙·양희택, 2013), 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결혼생활만이 아니라 생 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조명된 경 향이 더 많았다. 장애인의 차별경험에 대해 연구한 이지수(2011)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 별경험, 그리고 자기 낙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차별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방향의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중섭(2009)도 빈곤장애인의 생 활만족도에는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차별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산출하였다. 김계하(2005)도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희국(2010)도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있어 지각된 사회적 편견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미라(2011)도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선영(2004)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경험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장애인 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백은령·노승현(2010)의 연구에서도 장애인 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박현숙·양희택(2013)도 장애 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Bjornskov 외(2007)도 차별경험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Marcel과 Di,kers(1999)도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결혼만족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연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데, 오혜경(2011)은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 내 차별과 폭력 유무가 여성과 남성모두의 결혼생활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김민녀·채규만(2006)은 결혼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전통적 역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차별과장애인 그 자체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혼자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장애인의 차

별경험은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 3)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비장애인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비정상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을 사회적·문화적으로 분리하는 광범위한 부정적인이미지를 양산해 온 결과이다(Barnes and Mercer, 2000).

이런 원인에 대한 사례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제도 취득 시, 보험제도계약 시 차별받은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정도는응답자의 80% 수준이 그렇다고 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1)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채용 시 기업체에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이 '장애정도(20%)와 자격증(20%)'으로 장애조건이 학력(10%)보다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고 보는데, 장애상태는 불운, 무용, 다름, 억압, 질병 등 긍정적인 사회적 지배가치와 반하는 이미지와 결부된 차별과 낙인의 순환과정(Barnes and Mercer, 2000; 이지수, 2011)을 거쳐 더욱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승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장애유형별로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차별행위의 목적이 의도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차별과 둘째, 장애차별의 범위를 확장시킨 획기적인 개념으로서(Mine, 200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하고 불평등한 효과가 초래 되게 하는 간접차별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취업과 차별대우에 대한 원인으로 장애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불리한 물리적 접근성, 고용주와 동료의 부정적인 인식, 낮은 역할기대감,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을 꼽고 있다(Riches and Green 2003; Schur et al., 2005; Chouinard, 2010). 남정휘(2014)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진입가능성은 중증보다는 경증일수록 진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 유형별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장애 유형별로 고용차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고용노동부(2011)의 조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임금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장애인 평균임금 142만원으로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260만원에 비하여 54.6%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장애인의 89.6%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장애인들의 장애정도 및장애유형이 구직 및 직업유지에 차별 요인으로 보여 지고, 경제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수준, 사업체 규모 등도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 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인과구조를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를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장애유형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장애정도는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경제활동상태는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장애유형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장애정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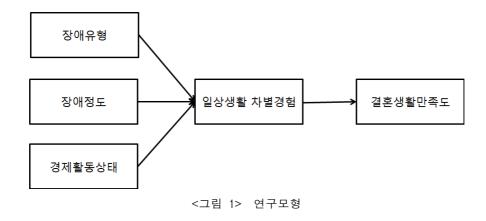
가설 6. 경제활동상태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통제하면 장애유형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 9.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통제하면 장애정도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 10.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통제하면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들 것이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용패널조사는 2008년도 1차년도 본조사 를 시작으로 하여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6차년도 패널조사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고. 조사성공 표본수는 4.161명으로 원표본 유지율이 81.7%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패널조사 가운데 최고수 준의 신뢰도와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패널을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방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패널 본인에게 응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 애 등 장애유형에 따라 직접 응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응답으로 처리하였고, 그 경우에 도 주요한 응답결과에 대해 당사자 본인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다. 6차년도 조사에서 대리응답자는 299 명으로 대리응답률은 7.2%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6차년도 패널조사 대상자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측정변수

#### (1)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은 15개 법정 장애유형을 4가지로 재분류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15개 법정 장애유형 가운 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는 신체외부장애로 재분류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는 감각 장애로 재분류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정신적장애로 재분류를,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 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는 신체내부장애로 재분류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에 따 라 본 연구에서의 장애유형은 ① 신체외부장애. ② 감각장애. ③ 정신적장애. ④ 신체내부장애로 측정 하였다.

장애정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법정 장애등급 1~2급을 중증으로 보았으나 단,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질환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까지 중증장애로 분류하였고, 그 외장애인을 경증장애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장애정도는 ① 중증, ② 경증으로 측정하였다.

#### (2)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는 다음의 정의에 따라 파악하였다. 취업자라 함은 ① 지난 주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 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③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도 평소 해오던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실업자라 함은 ① 지난 주 또는 지난 4주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라 함은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이나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①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 사람, ②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 ③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경제활동상태는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실업자, ⑤ 비경제활동인구로 측정하였다.

#### (3) 일상생활 차별경험과 결혼생활만족도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장애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겪게 되는 각종 차별경험의 정도를 ① 전혀 없음, ② 조금 있음, ③ 많음, ④ 매우 많음으로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의 정도를 ① 매우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으로 측정하였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PASW 21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은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자료를 표준화시킨 후에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회귀계수( $\beta$ 값)를 제시하였고, 이상의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05 수준으로 하였다.

특히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AMOS 구조방식과 SPSS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나, 본 연구모델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회귀분석만으로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의 회

귀분석 조합을 통한 매개변수 분석을 따르기로 하였다.

회귀분석 조합을 이용한 매개변수 분석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면, 우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이 유의미해야 하며, 아울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한다. 둘째, 매개변수를 종속으로 하여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한다.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하고, 아울러 독립변수는 매개변수가 투입되기 전보다 결과변수에대해 더 적은 영향력을 지녀야한다. 만일 세 번째 회귀식에서 매개변수가 부가됨으로써 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잠재적인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종속변수의 관계를 강하게 매개하는 것으로서 특히 독립변수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매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Baron and Kenny, 1986; 전선영, 2004에서 재인용).

## 4. 분석결과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 수는 3,463명이며, 남자가 2,067명(59.7%), 여자가 1,396명(40.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7세~81세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 57.61세(SD 8.98)로 그 중 50대가 1,286명(37.1%), 60대가 1,269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40대 505명(14.6%), 70대 이상 292명(8.4%), 30대 107명(3.1%), 20대 4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가 2,237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감각장애 876명 (25.3%), 신체내부장애 233명(6.7%), 정신적장애 117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3급이 762명(22.0%)로 가장 많았고, 그 외 6급 660명(19.1%), 5급 598명(17.3%), 2급 581명(16.8%), 4급 557명(16.1%), 1급 305명(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증과 경증 두 그룹으로 나누면 중증은 1,297 명(37.5%), 경증 2.166명(62.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063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고졸 967명(27.9%), 중졸 683명(19.7%), 무학 509명(14.7%), 대졸이상 241명(7.0%)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908명(5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임금근로자 889명(25.7%), 자영업주 507명(14.6%), 무급가족종사자 109명(3.1%), 실업자 50명(1.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결혼 및 동거 유배우자가 2.413명(69.7%)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자 528명(15.2%), 사별자 468명(13.5%), 별거자 54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으로는 서울이 615명(1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경기 577명(16.7%), 경남 273명(7.9%), 부산과 경북 각 250명(7.2%), 전북 236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81점(표준편차 .615)으로 결혼생활만족 수준이 보통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81점(표준편차 .615)으로 결혼생활만족 수준이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638(표준편차 0.789)로 조금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남성 여성 합계	2,067 1,396 3,463	59.7 40.3 100.0	경제활동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889 507 109	25.7 14.6 3.1		
	20대 30대 40대	4 107 505	.1 3.1 14.6	상태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50 1,908 3,463	1.4 55.1 100.0		
연령	50대 60대 70대 이상	1,286 1,269 292	37.1 36.6 8.4		유배우 (결혼/동거)	2,413 528	69.7 15.2		
	합계 평균 57.	3,463 61세(SD 8.9	100.0	혼인상태	이혼 사별 별거 합계	468 54	13.5 1.6		
	신체외부장애	2,237	64.6		합계	3,463	100.0		
장애유형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 합계	876 117 233 3,463	25.3 3.4 6.7 1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615 248 181 193	7.2 5.2 5.6		
	1급 2급	305 581	8.8 16.8		대전	64 79	1.8 2.3		
장애등급 (6급)	3급 4급 5급	762 557 598	22.0 16.1 17.3	거주지역	울산 경기 강원	48 577 170	1.4 16.7 4.9 3.1 5.2 6.8 7.0		
 장애등급	5급 6급 합계 중증 경증 합계	660 3,463 1,297 2,166	19.1 100.0 37.5 62.5		간 북 남 북 남 북 남 북 전 전 전 전 경영합	108 180 236 241			
(2급)	무학	3,463 509 1,063	100.0 14.7 30.7		경부 경남 합계	250 273 3,463	7.2 7.9 100.0		
학력	· 출 종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683 967	19.7 27.9	결혼생활 만족도		3.381/5.0(SD .615)			
	대졸이상 합계	241 3,463	7.0 100.0	일상생활 차별경험	평균 1.638,	/4.0(SD .78	89)		

주요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장애유형별 결혼생활만 족도의 총 평균은 3.35점(SD .610)으로 나타났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내부 및 신체외부장애의 결혼생활만족도가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감각장애 3.37점, 정신적 장애 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의 총 평균은 3.36점(SD .614)으로 나타났고, 중증의 결혼생활만족도는 3.30점, 경증의 결혼생활만족도는 3.42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의 총 평균은 3.41점(SD .574)으로 나타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결혼생활만족도가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가 각각 3.47점, 실업자 3.34점, 비경제활동인구 3.2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총 평균은 1.75점(SD .793)으로 나타났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적 장애의 차별경험이 2.0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감각장애 1.70점, 신체외부장애 1.62점, 신체외부장애 1.5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따른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총 평균은 1.70점(SD .770)으로 나타났고, 중증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1.95점, 경증의 차별경험은 1.45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에 따른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총 평균은 1.53점(SD .688)으로 나타났고, 이를 경제

활동상태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차별경험이 1.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실업자 1.60점, 무급가족종사자 1.47점, 임금근로자 1.41점, 자영업주 1.3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2>	주요변인의	일 바적	특성
> JL C/	1 4 1 1 1 1	2''	

구분			결혼생활만족	주도 (만점 5)	일상생활 차별경험 (만점 4)		
		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외부장애	2,237	3.39	.613	1.59	.773	
	감각장애	876	3.37	.610	1.70	.806	
장애유형	정신적장애	117	3.23	.535	2.08	.811	
	신체내부장애	신체내부장애 233		.680	1.62	.785	
	계	3,463	평균 3.35(SD .610)		평균 1.75	(SD .793)	
	중증(1,297)	2,166	3.30	.610	1.95	.869	
장애정도	경증(n=2,166)	1,297	3.42	.618	1.45	.671	
	계	3,463	평균 3.36(SD .614)		4) 평균 1.70(SD .77		
	임금근로자	889	3.47	.602	1.41	.616	
	자영업주	507	3.47	.573	1.36	.572	
경제활동	무급가족종사자	109	3.48	.521	1.47	.661	
상태	실업자	50	3.34	.539	1.60	.728	
	비경제활동인구	1,907	3.29	.635	1.82	.865	
	계	3,462	평균 3.41	(SD .574)	평균 1.53	(SD .688)	

## 2) 가설검증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에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 하여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의 회귀분석 조합을 통한 매개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의 검증을 위해 변수들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한 가설 5개를 제시하였고,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한 가설 2개를 추가설정하였다. 명목수준으로 측정한 변수의 경우에는 가변인화(dummy)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변인화 변수는 변수명 옆에 그 기준을 기록하였다.

#### (1)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 간의 가설검증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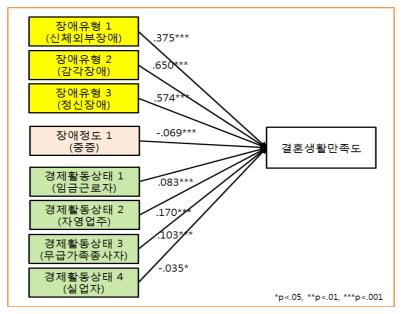
- 가설 1. 장애유형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장애정도는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경제활동상태는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생활만족도에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미치는 영향력 분석 결과, 결혼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F값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10.0%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로 설정한 장애유형,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 변수 모두가 결혼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장애유형 2(감각장애) 변수의  $\beta$ 값이 .650(p=.00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애유형 3(정신장애) 변수의  $\beta$ 값이 .574(p=.000), 장애유형 1(신체외부장애) 변수 .375(p=.000), 경제활동상태 2(자영업주) 변수 .170(p=.000), 경제활동상태 3(무급가족종사자) 변수 .103(p=.000), 경제활동상태 1(임급근로자) 변수 .083(p=.000), 장애정도 1(중증) 변수 -.069(p=.002), 경제활동상태 4(실업자) 변수 -.035(p=.0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463

모형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도생	В	표준오차	베타	t	미크릭필		
	(상수)	1.849	.481		3.843	.000		
	장애유형 1 (신체외부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1.798	.304	.375	5.917	.000		
장애 유형	장애유형 2 (감각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3.531	.485	.650	7.285	.000		
	장애유형 3 (정신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1.703	3 .185 .574		9.185	.000		
장애 정도	장애정도 1 (중증 1, 경증 0)	323	.078	069	-4.158	.000		
	경제활동상태 1 (임금근로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445	.085	.083	5.247	.000		
경제 하도	경제활동상태 2 (자영업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1.187	.109	.170	10.886	.000		
활동 상태	경제활동상태 3 (무급가족종사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1.445	.211	.103	6.862	.000		
	경제활동상태 4 (실업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619	.263	035	-2.352	.019		
	$R^2$	.100						
	adjusted R <sup>2</sup>	.098						
	F	57.462 (유의확률 .000)						



<그림 2> b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

즉. 결혼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장애유형 변수로서 신체내부장애에 비해 감각 장애에 해당할수록, 정신장애에 해당할수록, 신체외부장애에 해당할수록 결혼생활만족도에 있어 순서 대로 높은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상태 변수가 결혼생 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자영업주일수록.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해당할수록 결혼생활만족도와 순서대로 높은 정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 으며, 실업자에 해당할수록 결혼생활만족도와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장애정도에 있어서는 경증에 비해 중증에 해당할수록 결혼생활만족도와 부적인(-) 영향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설 1~3은 모두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와 일상생활 차별경험 간의 가설검증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장애유형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장애정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경제활동상태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미치는 영향력 분석 결과. 일상생활 차 별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F값이  $p \le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 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설명하는 전 체 모형의 설명력은 16.3%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로 설정한 변수가운데 경제활동상태 4(실업

자)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장애유형,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 변수가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장애유형 2(감각장애) 변수의  $\beta$ 값이 .684(p=.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장애유형 3(정신장애) 변수의  $\beta$ 값이 .466(p=.000), 장애유형 1(신체외부장애) 변수 .412(p=.000), 장애정도 1(중증) 변수 .257(p=.000), 경제활동상태 1(임금근로자) 변수 .173(p=.000), 경제활동상태 2(자영업자) 변수 .149(p=.000), 경제활동상태 3(무급가족종사자) 변수 .062(p=.000)의 순으로 높게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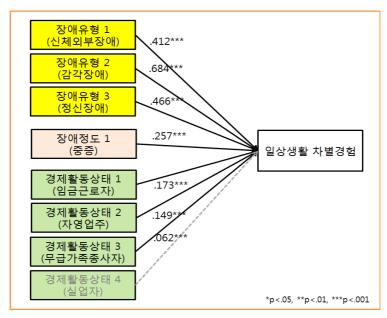
<표 4>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463

모형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立 A	В	표준오차	베타	ι	비기되면		
	(상수)	.415	.167		2.480	.013		
	장애유형 1 (신체외부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713	.106	.412	6.742	.000		
장애 유형	장애유형 2 (감각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1.343	.169	.684	7.959	.000		
	장애유형 3 (정신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500	.065	.466	7.743	.000		
장애 정도	장애정도 1 (중증 1, 경증 0)	.437	.027	.257	16.149	.000		
	경제활동상태 1 (임금근로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335	.030	.173	11.344	.000		
경제 활동	경제활동상태 2 (자영업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376	.038	.149	9.898	.000		
상태	경제활동상태 3 (무급가족종사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315	.073	.062	4.297	.000		
	경제활동상태 4 (실업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091	.092	.014	.997	.319		
	$R^2$	.163						
	adjusted R <sup>2</sup>	.161						
	F	100.888 (유의확률 .000)						

즉,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장애유형 변수로서 신체내부장애에 비해 감각장애에 해당할수록, 정신장애에 해당할수록, 신체외부장애에 해당할수록 일상생활 차별경험과 순서대로 높은 정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장애정도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증에 비해 중증에 해당할수록 일상생활 차별경험과 정적인 (+)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임금근로자에 해당할수록, 그리고 자영업자일수록,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일상생활 차별경험과

정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일상생활 차별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설 4와 5의 채택과 가설 6의 부 분채택을 알 수 있다.



<그림 3>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관계

#### (3)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관련 가설검증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변수 분석법에 따라,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로 설정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투입 전후에 따 라 독립변수의 β값이 줄어드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변수 효과를 측정하였 다. 이의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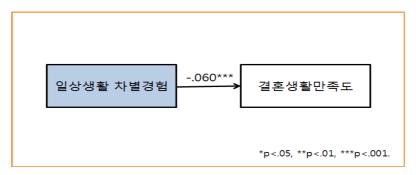
가설 7.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통제하면 장애유형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 9.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통제하면 장애정도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 10.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통제하면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바론과 케니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회귀식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면 매개모델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또한 매개변 수의 효과를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하였는데, 완전매개 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 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부분매개 효과란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와 매개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매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분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야하며, 완전매개 관계가 성립하면 β값 비교는 불필요해 진다고 하였다(Baron and Kenny, 1986; 전선영, 2004에서 재인용).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매개로 하여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표에 나타나 있는 1단계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낸 모형이고, 2단계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와 일상생활 차별경험 변수가 결혼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낸 모형이다.

가설 5의 확인을 위해  $\langle$ 표 5 $\rangle$ 의 2단계 모형을 보면 회귀모형의 F값은  $p\langle$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결혼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2단계 모형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와 일상생활 차별경험 변수가 결혼생활만족도를 10.3%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차별경험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준화계수  $\beta$ 값이 -.060(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생활만 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부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 7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일상생활 차별경험과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

마지막으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역할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독립변수인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의 회귀계수( $\beta$ 값)의 변화 폭을 살펴보면  $\langle$ 표  $5\rangle$ 와 같다. 일상생활 차별경험 변수를 투입하기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장애유형 1(신체외부장애)의 회귀계수는 .375에서 .351(p=.000)로 낮아졌고, 장애유형 2(감각장애)는 .650에서 .609(p=.000)로, 장애유형 3(정신장애)는 .574에서 .546(p=.000)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장애정도 1(중증)의 회귀계수도 -.069에서 -.053(p=.002)으로 낮아졌다. 경제활동상태1(임금근로자)도 .083에서 .073(p=.000)으로, 경제활동상태 2(x)연업자)도 .170에서 .161(p=.000)로, 경제활동상태 3(y)무급가족종사자)도 .103에서 .099(p=.000)로 낮아져 영향력이줄어들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경제활동상태 4(실업자)의 경우 -.035에서 -.036(p=.016)으로 회귀계수가 약간 커지고 있어 엄 격하게는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

<표 5>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N=3,463

모형		1단계					2단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В	표준 오차	베타	·	확률	В	표준 오차	베타	t	확률
	(상수)	1.849	.481		3.843	.000	1.780	.481		3.703	.000
	장애유형 1 (신체외부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1.798	.304	.375	5.917	.000	1.680	.305	.351	5.509	.000
장애 유형	장애유형 2(감각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3.531	.485	.650	7.285	.000	3.310	.488	.609	6.787	.000
	장애유형 3 (정신장애 1, 신체내부장애 0)	1.703	.185	.574	9.185	.000	1.620	.186	.546	8.692	.000
장애 정도	장애정도 1 (중증 1, 경증 0)	323	.078	069	-4.158	.000	251	.080	053	-3.138	.002
	경제활동상태 1 (임금근로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445	.085	.083	5.247	.000	.390	.086	.073	4.533	.000
경제 활동	경제활동상태 2 (자영업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1.187	.109	.170	10.886	.000	1.125	.110	.161	10.214	.000
상태	경제활동상태 3 (무급가족종사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1.445	.211	.103	6.862	.000	1.393	.211	.099	6.611	.000
	경제활동상태 4 (실업자 1, 비경제활동인구 0)	619	.263	035	-2.352	.019	634	.263	036	-2.412	.016
일상생활상의 차별경험							165	.045	060	-3.704	.000
R <sup>2</sup>		.100				.103					
adjusted R <sup>2</sup>		.098				.101					
F		57.462 (유의확률 .000)				52.758 (유의확률 .000)					

전반적으로 이상의 검증에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일 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역할 종류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즉, 매개변수가 투입되기 전과 후의 1, 2단계 독립변수 β값의 유의도를 보면 매개변수가 투입된 후에도 독립변수들의 β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므 로 오로지 매개변수만을 통해 독립과 종속의 관계가 중재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설 8과 9의 채택과 가설 7의 부분 채택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조건과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하여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장애인의 결혼생활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특징 및 각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 검증결과 요약 및 논의를 하고 이 결과가 갖는 정책적 의미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만족도는 3.381/5.00점으로 만족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1.638/4.00점으로 차별이 약간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장애유형별로는 신체내부 및 외부장애의 결혼만족도(3.39)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감각장애(3.37), 정신적장애(3.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별 결혼생활만족도는 중증의 결혼만족도(3.30)가 경증보다 낮게(3.42)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 결혼생활만족도는 무급가족종사자(3.48)가 가장 높았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각각 3.47), 실업자(3.34), 비경제활동인구(3.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있어서는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차별경험(2,08/4,0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각장애(1,70점), 신체내부장애(1,62점), 신체외부장애(1,5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별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중증의 차별정도(1,95)가 경증보다 높게(1,45)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비경제활동인구(1,82)의 차별이 가장 높았고, 실업자(1,60점), 무급가족종사자(1,47점), 임금근로자(1,41점), 자영업주(1,3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생활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보건복지부(2012)의 조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결혼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독립변수로 설정한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상태 4(실업자)와 장애정도 1(중증) 변수만 결혼생활만족도에 부적(-)으로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모든 변수는 결혼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유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결혼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장애유형(신체내부장애에 비해 감각장애에 해당할수록, 정신장애에 해당할수록, 신체외부장애에 해당할수록), 경제활동상태(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자영업자일수록,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해당할수록), 장애정도(경증에 비해 중증에 해당할수록)의 순으로 결혼생활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동안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들이 장애유형에 따라 결혼생활의 만족 정도의 차 이를 기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애유형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상대 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도에 따라 결혼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오혜경(2011)과 김혜경(2005)의 연구와는 달리.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측정한 장애정도가 결혼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고, 유사하게는 백은령·노승현(2010)의 연구에서도 장애정도가 장애 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 바가 있어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 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업 유무 및 경제적 수입. 경제적 안정 등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이정은(1999). 홍숙선(2001). 김효신 (1999), 문승연(2002), 오혜경(2011)의 연구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있어 경제활동상태 는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재확인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장애유형(신체내부장애에 비해 감각장애에 해 당할수록, 정신장애에 해당할수록, 신체외부장애에 해당할수록) 변수로서 결혼생활만족도에 있어 순 서대로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큰 영향력 변수는 경제활동상태 변수 로서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자영업주일수록,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해당 할수록 결혼생활만족도와 순서대로 높은 정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업자에 해당할수 록 결혼생활만족도와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정도가 결 혼만족도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경증에 비해 중증에 해당할수록 결혼 생활만족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차별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기본적 주장을 하면서도 장애의 구체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를 확인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경제활동상태가 구체적 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관련변인 간의 이론을 더 정교화 하였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넷째.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결혼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별경험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오혜경(2011)의 연구에서도 가족 내 차별과 폭력 유무가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은 것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경험과 결혼생활만족도는 역의 영향관계 가 있다는 이론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를 증명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의 총체적 효과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개입지 점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결과는 장애인의 결혼생활의 질에 대해 관심 을 갖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에게 보다 확장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편견 중 하나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혼은 어려울 것이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3.381/5.00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실태조사에서도 생활만족도 중 결혼생활만족도가 80%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론에서도 기술했지만 만족이라는 개념은 지극히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잣대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 인지 영역이다. 장애가 있음은 결혼생활분막족의 절대적 원인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더라도 결혼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롯이 차별적인 경험과 중증의 상태만이 결혼생활만족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암암리에 뿌리박은 곳곳의 차별적 요소와 습관을 없애는 노력이 절실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한 관계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과 차별경험에 대한 문항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한계를 범하고 있다. 즉, 단일문항이 갖는 대표성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결과를 모든 장애인의 결혼생활과 일상생활 차별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 제고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유형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의 결혼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므로 이들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별된 관심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장애가족 서비스 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결혼생활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가구 내에 여러 장애인이 존재할 하더라도 취약성이 증가되는 만큼 가중된 물리적·심리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직업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하여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별 지원을 강화하고 업주에게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고용장려 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장애 당사자부터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차별을 당할 시 신고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아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시정명령 등 소극적 자세의 권고가 아닌 적극적인 처벌을 부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마련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굳은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민석·김동주, 2014,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2): 137-164.

고용노동부, 2011, 『사업체 노동력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관련 진정 10배 이상 늘어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권영은, 2005, "뇌성마비장애인의 결혼을 통한 삶의 태도 변화", 『21세기사회복지연구』, 2: 33-51,
- 권정혜·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 임상』, 18(1): 123-139.
- 김계하. 2005. "후천성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 김광자. 2011. "취업장애인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득성, 1994, "결혼초기 결혼만족도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
- 김명자. 1985.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4: 139-166.
- 김민녀·채규만, 2006,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1(4):
- 김민유, 2012, "임금근로 장애인의 근로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경 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범규·남용현, 2014. "장애인의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가 구균등화 소득 3분위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3): 67-98.
- 김종일, 2013.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수용, 차별경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고용』, 23(4): 59-84.
- 김혜경, 2005, "여성지체장애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신, 1999, "중도장애인의 결혼만족도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국. 2010.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편견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 구』, 40(3): 299-326.
- 남정휘, 2014,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직업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무승연, 2002, "정신장애인의 결혼생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 2013, "장애여성들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결혼불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 학』, 20: 25-42.
- 박준성·허성호·정태언, 2011.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직업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1(1): 167-186.
- 박현숙·손민정·손진영, 2013.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1): 55-76.
- 박현숙·양희택, 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 으로". 『장애와 고용』, 23(3): 153-174.
- 백은령·노승현, 2010, "노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차별경험 및 차별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한국장애인복지학』, 13: 1-21.
- 백은령·노승현, 2012, "장애노인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재활복지』, 16(3):
- 변용찬·김성희·윤상용·강민희·최미영·손창균·오혜경, 2009,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989, 『장애인부부의 결혼실태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성계화, 2012, "다문화가정 남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 손진영·김형모, 2014,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과 취업 여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1): 199-225.
- 양정빈·김소진, 2011, "결혼한 여성지체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6(3): 35-62,
- 염동문·이상대, 2014, "매개된 조절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한 직장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와고용』, 24(1): 411-435.
- 유 옥, 2010, "결혼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신혼기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 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혜경. 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1: 27-74.
- 오혜경, 2011,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4: 51-68.
- 이미라, 2011,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경험의 조절 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4,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 요인과 수준에 대한 비교 연구", 『행정논집』, 31: 95-122.
- 이정숙, 2009.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 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중섭, 2009, "빈곤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0): 277-299.
-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277-299.
- 임수민, 2011,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결혼안정성",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선영, 2004, "사회복지교육과 사회복지가치 및 옹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 정혜선, 2005, "중년기 여성의 이사소통 및 부부용서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 1999.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 실직 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현, 2002. "정신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자원, 성역할관, 관계성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한승희, 2001, "간접차별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12: 193-208.
- 한애경·윤혜미, 2012, "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고용』, 22(3): 153-181.
- 현은민, 2007,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45-58.
- 홍숙선, 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 및 자율지향성과 성 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 Anderson S. A., and Sabatelli, R. M., 2003,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 Barnes, C., and Mercer, G., 2000, Disability Culture: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Sage Publication.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les, M. B., 2004, Poverty and Disability: Advocating to Eliminate Social Exclusion, National Cent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rinidad and Tobago.
- Bjornskov, C., Dreher, A., and Fischer, J. A. V., 2007, "On Gender Ine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Does Discrimination matter?", LOF Working Paper, 161.
- Chouinard, V., 2010, "Women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of government employment assistance in Canada." Disability & Rehabilitation, 32(2): 48-158.
-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Huck, S., and Melby, J. N.,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46,
- Hawkins, J. A., Weisberg, C., and Ray. D. W., 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3): 479-490.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 Marriage Fam, 30: 647-648,
- Karney, B. R., and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Marcel, P. J., and Dijkers, M., 1999,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0(8): 867-876.
- Mine, M., 2003, "Concepts of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ERA Forum, 2003.
- Rice, F. P., 1990,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s and Familie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California.
- Riches, V. C., and Green, V. A., 2003, "Social integration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 Australian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9(3): 127-142.
- Rollins, B. C., and Feldman, H., 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0-8.
- Schur, L., Kruse, D., and Blank, P., 2005, "Corporate culture and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3(1): 3-20,
- Vinokur, A. D., Price, R. H., and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66-179,

#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Type, Severeness, Economic Act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Using the Employment Panel Data in Everyday Discrimination

Lee, Sunggyu (University of Seoul)

This paper explores the how the disability type, severeness and economic activeness affects marital satisfaction, and seeks to improve marital satisfaction among disabled by clarifying mediating effects of discriminatory experiences in everyday experiences.

This research was done with 3,463 married disabled who were prone to everyday discrimination, among whom were enrolled in research database of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The research showed positive effect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everyday discriminatory experience except for unemployed people and severe among all the disabled type (external disability, sensory disability, mental disability, internal disability), disability severeness (severe and light), and economic activeness (paid workers, self-employed, home-worker, unemployed, not economically active).

Also,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type, severeness, economical act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partly mediated through everyday discriminatory experiences. Therefore, active movements to reduce everyday discrimination are strongly advised.

Key words: disabled, disabled type, disabled severeness, economic activeness, marital satisfaction, everyday discriminatory experience

[논문 접수일 : 14. 10. 20, 심사일 : 14. 10. 28, 게재 확정일 : 14. 11. 08]